

영등포구의회
제13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. 28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최미경의원의 10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1. 18
- 제 안 자 : 최미경 (11인)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● 지원기준(안 제3조)

-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함

● 지원대상(안 제4조)

-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정함

■ 관련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중구, 서초구, 종로구, 강남구, 강서구, 관악구, 양천구, 동대문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조례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- **안 제3조 지원기준은** 예산의 범위내에서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 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고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하며

- **안 제4조 지원대상은**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,
 - **안 제7조에는**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
 - **부칙에**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4조·제10조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※ 참고로 2008년 1월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8개구로 둘째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, 셋째 30만원에서 100만원, 넷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. 28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1. 관련법령
2.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관 련 법 령

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 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 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■ 건강가정기본법

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
3. 안정된 주거생활
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 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>

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| 구 분 | 조례제정 | 지 원 기 준 |
|------|--------------|--|
| 중 구 | 2007. 4. 10 | 둘째 2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300만원, 다섯째 500만원, 여섯째 700만원, 일곱째 천만원, 여덟째 1,500만원, 아홉째 2천만원, 열 번째 이상 3천만원 |
| 서초구 | 2007. 5. 31 | 첫째 1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100만원 |
| 종로구 | 2007. 6. 15 |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100만원 |
| 강남구 | 2007. 6. 22 |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300만원, 다섯째 이상 500만원 |
| 강서구 | 2007. 10. 5 | 셋째 3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|
| 관악구 | 2007. 11. 15 | 둘째 1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1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 |
| 양천구 | 2007. 12. 26 | 둘째 10만원, 셋째 30만원, 넷째 50만원, 다섯째 이상 100만원 |
| 동대문구 | 2차 정례회 통과 | 수정안 : 둘째 30만원, 셋째 이상 50만원 (원안 : 첫째 10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 30만원, 넷째 이상 50만원) |

※ 영등포구 소요예산

- 셋째아이 220명 × 500천원 = 110,000천원
- 넷째아이 이상 50명 × 700천원 = 35,000천원